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3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의결권 부여 및 심의·의결사항 추가 등	3
2.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14
3.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 추가	18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21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32인

(2) 제 안 일 : 2024. 9. 30.

(3) 회 부 일 : 2024. 10.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 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의안번호 제 4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의결권 부여 및 심의·의결사항 추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변경하고, 심의·의결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을 추가하며(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동 사항들을 심의할 때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함)의 심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또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노동자단체·비영리단체 추천’을 ‘노동자단체·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국회 추천’으로 변경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8항).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u>심의하기</u>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 ----- <u>심의·의결하기</u> -----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 .	② ----- ----- <u>심의·의결한다</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u>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u>

<신 설>

<신 설>

5. (생 략)

③·④ (생 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 5. (생 략)

⑥ (생 략)

<신 설>

<신 설>

⑦ (생 략)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지역의사 정원

7.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2. ~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정할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정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제9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인력의-----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7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의사인력을 제외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2조(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관한 특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여 이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간호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본다.	

나. 검토의견

-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학생 정원의 결정구조와 관련하여,
- 현행 제도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4항¹⁾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인력 양성에 관련되는 대학의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1)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후단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 3.~5. (생략)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의료인력 등의 총 수요를 정하여 통보하기 전에 통상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²⁾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관련 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과 관련한 인력수요를 결정할 때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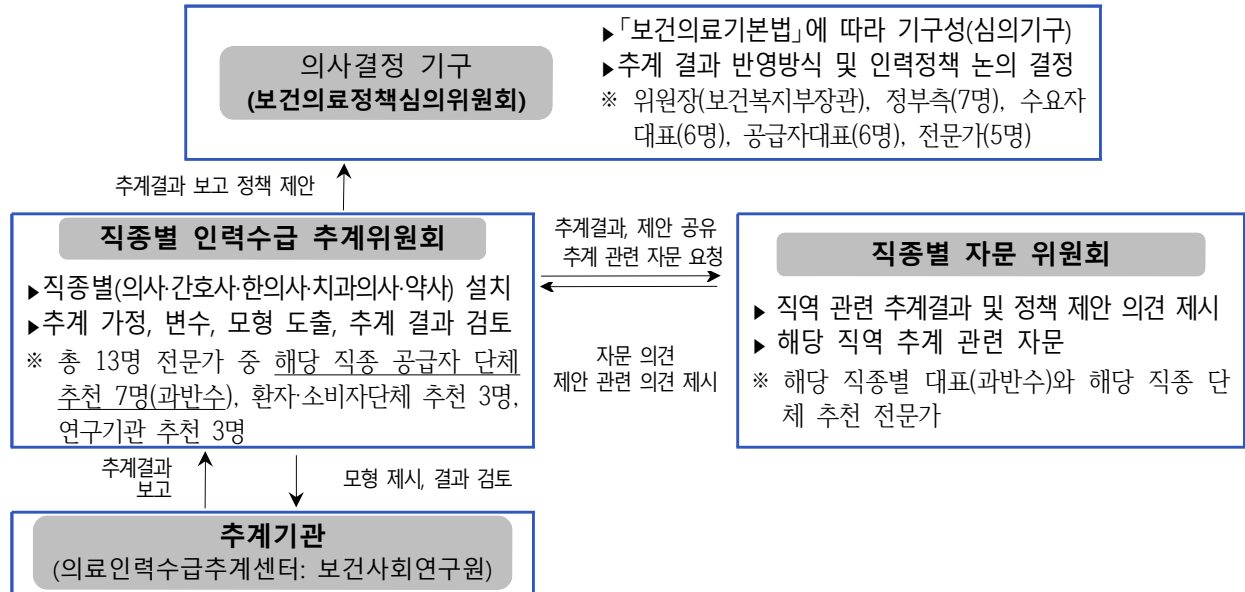
□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등에서 제기된 의료인력수급의 과학적 추계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세부 구성방안”(9. 30.)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추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추계기관’(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전문적 추계 작업을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 내 의사결정구조를 보완하려는 것임.

2)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논의기구 간 역할 및 구조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구성

□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간호사의 경우 대학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³⁾을 전제로 하므로 최종 의사 결정권자를 현행 교육부장관에서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다른 의료인(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과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됨.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제4440호): 2024.9.30. 제출, 2024.10.2. 교육위원회 회부

현행	개정안
제32조(학생의 정원) (생략) <신설>	제32조(학생의 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과대학 입학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의과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내 의사결정과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되고, 이때 심의위원회는 현행과 달리 의결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내 최종 의사결정 기구가 되며, 수급추계 및 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함.
- 또한, 적용직종의 범위는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세부 구성방안”이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의 5개 직종에 적용하려는 것과 달리,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⁴⁾ 전반에 적용하려는 것임.
- 적용시점은 의과대학의 경우 202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의사인력을 제외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2조(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 정원 결정구조 비교 >

	정부 방안	개정안
법률 개정	▪ 법률 개정 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고등교육법」 개정
최종 의사결정권자	▪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의사·간호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개정사항) ▪ 기타 보건의료인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내 의사결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자문기구→의결기구 변경)
심의기구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신설) ※30명 이내(보건의료인력/노동자·시민·소비자/전문가 단체별 추천인,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로 하되, 공무원 아닌 위원이 2/3
자문기구	▪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신설) ※총 13명 중 해당 직종 추천 전문가 7명 ▪ 직종별 자문위원회(신설) ※추계위원회·자문위원회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설치·운영	▪ 직종별·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신설) ※해당 직종 위원이 과반수
적용직종	▪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 약사·한약사 ▪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 응급구조사·영양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부칙 특례	-	▪ (의사·간호사) 2026학년도 입학정원 결정시부터 적용

□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세부 구성방안”에 따른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의 전문성·과학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위원회 등 기구의 설치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내 의사결정구조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사결정구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 적용시점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① **보건의료인력 대학 정원 결정구조**와 관련하여,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업무는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소관 사무로서 교육부장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 범위와 교육부장관의 직무권한을 제한한다는 점,⁵⁾ ▲대학 정원은 교육의 질 및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가 전반적인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⁶⁾ ▲보건복지부 내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인력 측면 뿐 아니라 보건의료제도 전반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⁷⁾을 각각 이유로 하여 현행과 같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음.

한편, 의사결정의 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를 최종 의결기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⁸⁾도 제시되고 있음.

②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외에도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포함시키고 있

5) 교육부

6) 대한병원협회

7) 보건복지부

8) 대한의사협회

는데, 지역 단위 의료인력의 정원을 구체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어렵고 정원 확충을 위하여 강제적 수단을 동반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⁹⁾ 지역 내 배출된 의료인력이 해당 지역 내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¹⁰⁾ 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역의사 정원’을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¹¹⁾의 심사 상황에 맞추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건의료양성 ‘대학’의 범위에 전문대학 등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¹²⁾

③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위원 중 ‘노동자단체,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노동자단체,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단체에서 직접 추천하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

9) 대한의사협회

10) 대한병원협회

11) ○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3건)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익의원 대표발의, 772),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홍의원 대표발의, 795):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2024.8.20.)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대표발의, 1617): 보건복지위원회 회부(2024.7.12.)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1건)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694):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2024.8.20.),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심사(2024.8.23.)

12)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서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을 각호에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학생의 정원)에서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전문대학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하다는 의견도 있으며,¹³⁾ 국회 추천 방법 및 인원을 구체화¹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심의위원회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별 인원수는 정하고 있지 않은데,¹⁵⁾ 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할 경우 위원 구성별 인원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④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을 심의·의결하면, 의사·간호사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제4440호)에 따라

13) 대한간호조무사협회

14) 교섭단체 추천,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등의 입법례가 있음.

「10·29이대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7. (생략)

④ 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5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②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심의위원회가 법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되고, 치과의사·한 의사·조산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되나 최종적으로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들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인력(간호조무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응급구조사·영양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는 개정안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대학 학생 정원을 심의·의결한다 하더라도,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이들 직종에 관련한 대학의 학생 정원은 각 대학의 학칙 규정 사항이어서 법체계상 부조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⑤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부칙 제2조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 의과대학 정원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¹⁶⁾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교육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에 관한 사항도 고등교육법령 체계 안

16)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반면, 2025학년도 증원 결정을 수용할 경우 양질의 의학교육이 불가능하고 한번 투자된 의료교육 인프라를 다시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5학년도부터 부칙 제2조를 적용하도록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¹⁷⁾

2.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이고 과학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심의사항,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분과위원회(수급추계방문 및 직종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9조의2(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이고 과학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1.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u> <u>· 한의사 · 치과의사</u>

17) 대한의사협회

2. 「의료법」 제6조에 따른 조산사

3. 「간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호사등

4.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7.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수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2. 진료권 단위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3. 진료권별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추계

4.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3.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에 관한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⑥ 수급추계위원회는 수급 추계 활용 통계, 변수, 모형 등 구체적인 추계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보건의료인력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

	<u>우 해당 직종 위원이 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u> <u>⑧ 그 밖에 수급추계위원회의 구 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의결 전 단계에서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 단체, 노동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 통계학 등 전문가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수급 추계 모형 등을 정하거나 직종별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 각계로부터의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적·전문적 심의를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수급추계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바,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수급추계위원회를 심의위원회 산하 자문기구가 아닌 자율적·독립적 의결기구로 구축하고, 위원은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소비자·시민단체 추천 위원은 최소화하며,¹⁸⁾ 위원장도 보건복지부차관이 아니라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의학 적 전문성에 중심을 둔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¹⁹⁾

18) 대한의사협회

19)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세부 구성방안”에서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이를 직 종별(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 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하되, 각 수급추 계위원회별로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총 13인 중 7인) 로 구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어, 개정안과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단위, 위원 자격 및 구성 등에서 내용상 차이가 있음.

3.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지원전문기관”이라 함) 의 역할에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위원회 사무 처리를 추가하여 명시하고, 업무로서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원 적정성 평가’를 추가하며, 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보건의료인 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지원전문기 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u>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 <u>보건의료인 력의 효율적 지원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u>

수 있다.	----- ----- -----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u>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원 적정성 평가</u>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²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 개정안은 지원전문기관의 목적으로 ‘정책 개발 등 연구의 수행’을 추가하고 수행 업무로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원 적정성 평가’를

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추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세부 구성방안”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 추계 작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지원전문기관의 업무로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원 적정성 평가’를 추가한 것에 대하여는, 적정성 평가 대상이 지역 내 실제 활동이 필요한 의사수인지 아니면 지역 내에서 의사 양성에 필요한 의대 정원인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²¹⁾

또한, 현행법에서 지원전문기관의 업무로 규정한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²²⁾ ‘제15조에 따른 조사·연구 사업’²³⁾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 대한병원협회

22) 추가하고자 하는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원 적정성 평가’업무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등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미 현행 제3호(위원회 운영 지원)가 있으므로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대한병원협회).

2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실태조사 지원
3.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5. 제1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상담 및 지원
6. 제15조에 따른 조사·연구 사업
7.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 관리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조사·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 방안
3. 보건의료인력이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5.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방안
6.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국외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8.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중장기 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9.30.)하고 추진 중임.
 - 의료인력정책은 전체 보건의료제도와 함께 논의가 필요한 점, 전문적 추계논의를 위해 일정한 전문성 자격요건이 필요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부(수용불가)

-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분야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업무는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의 소관 사무이며, 교육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함.
 - 이에, 개정안이 제안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 범위와 교육부장관의 직무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수용 불가함.
 - 또한, 의사·간호사의 정원만 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한의사·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른 유사 직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수용 불가함.

-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 가능함.

3) 대한의사협회(수정)

- 수급추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동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임.
- 다만,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가 아닌 독립적 기구로 구축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써 역할을 부여하여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고,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소비자·시민단체 추천 위원은 최소한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지역의사 정원 및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을 정하고 이를 따르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보건의료인력의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심의·의결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 즉시 중단 및 2025학년도를 포함하여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함.

4) 대한병원협회(수정)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업무 추가 신설 관련,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은 현행과 같이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고, ‘지역의사 정원’과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의 해석상 모호성 및 두 사항간 내용적 중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국회 추천으로 변경하는 것은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때, 국회에서 추천받는 입법례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을 상위 심의·의결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는 것은 정부 주도의 논의 구조로 비취질 가능성 존재하고, 직종별로 구성하여 핵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심의사항 추가 신설 관련, ‘진료권별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추계’는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과 법체계상 충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수행 업무 신설 관련,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원 적정성 평가’의 해석상 모호성 및 업무내용의 중복성으로 신설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수정)

- ☐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는 현행의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대한영양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찬성)

- ☐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명단 (총 25명, 임기 2023.8.10.~2025.8.9.)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위원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정부 (7)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
	교육부	오석환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
	환경부	이병화	차관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수요자 대표 (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이사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김명호	의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
공급자 대표 (6)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 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전문가 (5)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박현경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성철	교수

* '24.2월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기준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총 25명, 임기 2021.1.27.~2023.1.26.)

* 제2기 위원 구성 예정

- 총 25명 (수요자단체 5명, 공급자단체 13명, 전문가 3명, 공무원 4명)
- 임기: '21.1.27. ~ '23.1.26.(2년간)

구분	소속	성명	직책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정부 (3)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기획재정부	이대희	경제구조개혁국장
	교육부	최은희	고등교육정책과
수요자 대표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	신현호	부의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공급자 대표 (13)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창주	치무이사
	대한한 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안경사협회	윤일영	윤리이사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김혜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전문가 (3)	서울대학교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